

한국운동생리학회 회장선출규정 시행세칙

제정 2013. 4. 20.

제1조(목적) 이 시행세칙은 한국운동생리학회규정(이하 “규정”이라 한다)에서 위임받은 회장 선출의 사항과 기타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선거관리위원회구성) 한국운동생리학회 회장선출을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)를 구성하여 운영한다.

- ① 위원회의 구성은 정기총회 60일전에 구성한다.
- ②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과 부회장 및 상임이사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호선한다.

제3조(기능)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.

1. 선거일결정 및 공고
2. 선거관리위원장 선출
3. 선거후보 등록 업무
4. 후보 등록 서류 및 운영계획서 접수 및 심의
5. 회장후보자 선정 및 이사회 상정
6. 선거관련 이의신청의 심의 의결
7. 기타 회장후보자 선정 및 추천에 관한 주요 사항

제4조(후보등록)

1. 후보등록은 정기총회 45일 전에 하여야 한다.
2. 후보의 자격은 평생회원에 한한다.
3. 후보는 다음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.
 - ①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
 - ② 후보추천서(이사 10인 이상의 추천)
 - ③ 학회운영계획서(소견 및 공약)
4. 기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서류

제5조(후보자추천과 당선자 결정) 위원회에서 상정된 후보가 1인일 때는 이사회에서 찬반 투표로 결정하고 2인일 때는 경선을 통하여 1인을 결정하여 총회에 상정한다.

- ① 위원회에서 상정된 후보는 총회의 동의 및 인준을 얻어야 한다.
- ② 위원회는 이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자를 지체 없이 회장에게 통보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시행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